

## 산지전용 현황

기관명: \_\_\_\_\_

년 월 현재

용도별	합 계(A+B+C)					전용협의(A)				전용허가(B)				전용신고(C)						
	건수	면적(m <sup>2</sup> )		준모전	복구비(천원)	건수	면적(m <sup>2</sup> )		준모전	복구비(천원)	건수	면적(m <sup>2</sup> )		준모전	복구비(천원)	건수	면적(m <sup>2</sup> )		준모전	복구비(천원)
		소계	보전				소계	보전				소계	보전				소계	보전		
합 계	금 회																			
	누 계																			
농 지	금 회																			
	누 계																			
초 지	금 회																			
	누 계																			
공 장	소계	금 회																		
	누 계	금 회																		
	산업단지	금 회																		
	누 계	금 회																		
	일반공장	금 회																		
누 계	금 회																			
택 지	그 밖의 공장	금 회																		
	누 계	금 회																		
	소계	금 회																		
	누 계	금 회																		
	택지·도시개발	금 회																		
누 계	금 회																			
택 지	농기주택	금 회																		
	누 계	금 회																		
	일반주택	금 회																		
	누 계	금 회																		
도 도시	그 밖의 주택	금 회																		
	누 계	금 회																		
도 도시	금 회																			
누 계	금 회																			
교 육	금 회																			
누 계	금 회																			
종 교	금 회																			
누 계	금 회																			
국 방	금 회																			
누 계	금 회																			
전 기·통 신	금 회																			
누 계	금 회																			
묘 지	금 회																			
누 계	금 회																			
축 사·참 고	금 회																			
누 계	금 회																			
골 프	금 회																			
누 계	금 회																			
스 키	금 회																			
누 계	금 회																			
체 육	금 회																			
누 계	금 회																			
관 광	금 회																			
누 계	금 회																			
공 용·공 공	금 회																			
누 계	금 회																			
그 밖의 시설	금 회																			
누 계	금 회																			

## 작성요령

1. 조사대상: 조림, 숲가꾸기, 벌채,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및 산지일시사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모든 산지전용 현황
2. 작성요령
  - 가. 농지: 「농지법」에 따른 농지
  - 나. 초지: 「초지법」에 따른 초지
  - 다. 공장
    - 1) 산업단지: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산업단지, 농공단지
    - 2) 일반공장: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장
    - 3) 그 밖의 공장: 1) 및 2) 외의 공장
  - 라. 택지
    - 1) 택지·도시개발: 「택지개발촉진법」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및 「도시개발법」에 따른 도시개발사업
    - 2) 농가주택: 농림어업인이 농림어업의 경영을 위하여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건축하는 주택 및 부대시설
    - 3) 일반주택: 「주택법」 및 「건축법」에 따른 주택
    - 4) 그 밖의 주택: 1)부터 3)까지의 규정 외의 택지조성관련 사업에 따른 주택
  - 마. 도로시설: 「도로법」, 「농어촌도로정비법」, 「사도법」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등에 따른 법정 도로
  - 바. 교육시설: 「유아교육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시설, 그 밖의 교육·연구시설 부지 등
  - 사. 종교시설: 종교단체 또는 그 소속 단체에서 설치하는 사찰·교회·성당 등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
  - 아. 국방·군사시설: 「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방·군사시설
  - 자. 전기·통신시설: 「전원개발촉진법」에 따른 전원개발사업, 국가통신시설 또는 「전기통신기본법」에 따른 전기통신설비
  - 차. 묘지시설: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묘지·화장시설·봉안시설 등
  - 카. 축사·창고: 농림축수산물의 창고, 축산시설 등
  - 타. 골프장: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골프장
  - 파. 스키장: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스키장
  - 하. 체육시설: 타목 및 파목 외의 체육시설
  - 거. 관광시설: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와 관광숙박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등
  - 너. 공용·공공용시설: 가목부터 거목까지 외의 공용·공공용 시설
  - 더. 그 밖의 시설: 가목부터 너목까지 외의 시설